

범어도서관 도서관 밖 도서관 버스임차 계약특수조건

수성구립범어도서관 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관하여 버스 운행 용역업체(이하 “계약상대자”)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, 범어도서관(이하 “발주처”)와 다음의 각 조항을 약정한다.

제1조(용역비 및 지급방법) ①매월 용역비는 “발주처”가 지정한 임차차량 운행확인서에 운행일시, 운행구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운전자의 서명을 받아 익월초에 청구한다.

②용역비 지급방법은 매월 “계약상대자”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, “발주처”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.

제2조(차량부대시설) ①“계약상대자”가 제공하는 버스는 내부에 냉·난방시설, 블랙박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한다.

제3조(대차 및 기사교체) ①“계약상대자”는 반드시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
②“계약상대자”는 차량의 고장 또는 운전기사 결근 등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정상운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처에 신속히 통보하고, 동급 차량을 대체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결행 및 위약금) ①“계약상대자”는 천재지변으로 결행한 버스에 대하여 “발주처”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액을 “발주처”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, “발주처”도 당일 운행하지 못한 버스에 대한 임차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결행, 운행미완수 및 사전 동의 없는 대체운행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“계약상대자”가 책임을 진다.

1. 무단결행 : “계약상대자”는 무단결행이 발생한 경우에

「결행대수 × 계약단가 × 결행일수」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“발주처”에 납

부하여야 한다.

2. 운행미완수 : “계약상대자”는 운行道중 고장 및 지정된 운행출발시간을 위반하는 등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행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지연된 사실이 승차공무원으로 부터 확인되면 “계약상대자”는 지정된 시간보다 이십(20)분 이상 지연 도착 운행시는 단가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“발부처”에 납부하고, 일십(10)분 초과시마다 10%씩 추가한 금액을 “발주처”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운행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운행을 완수할 수 없었음을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3. 사전 동의 없는 대체운행 : “계약상대자”는 사전 동의 없이 대체운행(다른 차량 및 운전기사가 운행)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차량 계약단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“발주처”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전항의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“발주처”는 제1조의 용역비에서 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한다.

제5조(계약해지 및 변경) ①“발주처”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“계약상대자”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“발주처”에서 타업체와 계약시까지 운행해야 하며, 계약보증금은 범어도서관에 귀속된다.

1. “계약상대자”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
 2. “계약상대자”가 3회 이상 무단 결행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한 경우
 3. “계약상대자”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(부도)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4. “계약상대자”가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
- ②전항 이외에 “발주처”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 사전에 “계약상대자”와 협의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가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(부도)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즉시 “발주처”에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“발주처”는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및 경제상황으로 급격한 가격변동 등 기타 계약조건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한 경우에는 계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자동차보험) ①“계약상대자”는 버스 운행차량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, 용역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“발주처”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행정 및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제7조(사고책임) 본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“계약상대자”가 소유한 버스 또는 부득이 한 사유로 타 회사의 대차 운행한 버스가 운행하던 중 사고로 인하여 승차자 또는 타인의 인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에 따르는 행정 및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진다.

제8조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 ①계약상대자는 “발주처”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②“계약상대자”는 회사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“발주처”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는 동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(재판관할) 본 계약에 관한 모든 소송의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.

제10조(기타) ①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발주처”가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.

②기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)에 따른다.